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발 의 자 : 김달호 의원(1명)

찬 성 자 : 김제리, 한기영, 오중석,  
이광호, 이동현, 이호대,  
김정태, 김태호, 김경우,  
채인묵 의원(10명)

## 1. 제안이유

- 영상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융·복합으로 그 분야가 날로 확장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영상산업의 범위를 영화·애니메이션·비디오물, 음악·게임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같이 협소한 영상산업의 범주로는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문화컨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영상산업의 범위에 드라마·광고를 추가하고 영화제를 영상제로 확대하는 등 영상산업 분야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산업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영상산업의 범위에 드라마, 광고를 추가함(안 제2조)
- 나. 영화제를 영상제로 확대함(안 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영상진흥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의뢰서 첨부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드라마·광고·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영상제의 지원) ① 시장은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상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영상 관련 조직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 생산되는 영상물을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p> <p>가. 영화·애니메이션·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p> <p>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p> <p>다. <b>방송</b>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p> <p>라. 그 밖에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 생산되는 영상물을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b>드라마·광고·방송</b>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p> <p>라. (현행과 같음)</p>
<p>제6조(<b>영화제</b>의 지원) ① 시장은 <b>영화를 통한 영상문화</b>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b>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다.</b></p> <p>② 시장은 <b>영화제</b>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b>영화제</b> 조직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제6조(<b>영상제</b>의 지원) ① ----- <b>영상문화</b>-----</p> <p>----- <b>시</b> -----</p> <p><b>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b></p> <p>② ----- <b>영상제</b>-----</p> <p>----- <b>영상</b> -----</p> <p><b>관련</b> -----</p> <p>-----.</p>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이정수

☎ 02-2180-7942

e-mail : intezer@seoul.go.kr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 영상제 지원 비용(제6조)

- 영화제를 제외한 기타 영상제 지원 비용

###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4,000,000천원(연평균 800,000천원)

나. 영상제 지원비 ≙ 4,000,000천원

○ 영상제 지원비 =  $\sum_{i=1}^5$ (연간영상제지원비용)<sub>i</sub>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2023년)

- 연간 영상제 지원비 = 건당영상제지원비용 × 연간 지원건수  
= 133,333천원 × 6건 ≙ 800,000천원

·건당영상지원비 = 기존 영화제 지원비 ÷ 지원건수  
= 1,200,000천원 ÷ 9건 = 133,333천원

·연간 지원건수 = 기존 영화제 지원건수 × 3년 평균 추정 지원비율  
= 9건 × 63.9% = 6건(반올림)

※ 추정지원 비율은 서울촬영지원 사업 장르별 지원현황 중 영화지원 편수 대비  
드라마·기타 지원 편수 비율

·드라마·기타 비율 = 108 ÷ 169 = 63.9%

·영화지원 실적 : 장편 78편 + 단편 91편 = 169편

·드라마·기타 실적 : 드라마 47편 + 기타 61편 = 108편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합계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주 : 1.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서울시 문화융합경제과 자료를 사용하여 추계

○ 서울촬영지원 사업 장르별 지원현황(최근 3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장편 극영화(국내·외)	75	27.3	75	27.9	83	28.9	78	28.2
단편영화	107	38.9	76	28.3	90	31.2	91	32.9
드라마	42	15.3	55	20.4	45	15.6	47	17.0
기타 (다큐, 뮤직비디오, CF 등)	51	18.5	63	23.4	70	24.3	61	22.0
계	275	100	269	100	288	100	277	100